

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([주]퓨어마인농업회사법인-퓨어마인드유향)

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-1227(2024. 4. 4.)

업체명 (제품명)	해당 제조번호 (사용기한)	위해등급	회수사유		
			시험항목	기준/결과	판정
(주)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 (퓨어마인드유향)	PM2641D-08JUN 22 (2025.6. 7.)	2등급	관능(성상)	대한약전 /관능 (성상)부적합	부적합

2. 위 호와 관련하여 “(주)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” 에서 제조·판매한 “퓨어마인드유향” 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(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, 각 시·도 및 관련 협회에서는 상기 회수 정보에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내 기관 및 회원사 등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·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 끝.